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58
----------	-------

발의연월일 : 2025. 9. 5.

발 의 자 : 송언석 · 박충권 · 이인선
김상훈 · 이달희 · 신성범
박수영 · 유상범 · 인요한
곽규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된 증권을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이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등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실제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의 규정을 상향하면서 대상 기업의 요건을 삭제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능하도록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물납매수 예약신청 기간도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2의 제목 중 “제한”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증권”을 “증권(이하 이 조에서 “물납 증권”이라 한다)”로, “본인 및”을 “본인(이하 이 조에서 “물납자”라 한다)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물납 증권을 물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하며,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

1. 물납 증권 피상속인이 물납 증권 발행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2. 물납자가 물납 증권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일 것
3. 물납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허가일(이하 이 호에서 “물납허가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할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납 증권의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물납으로 취득한 지분증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제한)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물납된 <u>증권</u> 의 경우 물납한 <u>본인</u>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u>증권</u> 을 그 증권시장에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의2(물납 증권의 처분 등) ① ----- <u>-----증권(이하 이 조에서 “물납 증권”이라 한다)</u> ----- <u>본인(이하 이 조에서 “물납자”라 한다)</u> ----- ----- ----- -----. ----- ----- ----- ----- -----.
② (생략) <u><신설></u>	② (현행과 같음) ③ <u>물납 증권을 물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익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가격은 예정가격 이상으로 하며, 수납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처분할 수 없다.</u>

③ (생략)	1. <u>물납 증권 피상속인이 물납 증권 발행법인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u> 2. <u>물납자가 물납 증권 발행법의 최대주주 또는 대표이사일 것</u> 3. <u>물납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른 물납허가일(이하 이 호에서 “물납허가일”이라 한다)부터 3년 이내에 매수예약을 신청하고, 물납허가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를 신청할 것</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	--